

무배당 The Best Choice 연금보험 II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사업 방법서 별지)

무배당 The Best Choice 연금보험 II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유형

무배당 The Best Choice 연금보험 II_1종(이율확정 10년)_1형(거치형)

무배당 The Best Choice 연금보험 II_1종(이율확정 10년)_2형(쿠폰형)

무배당 The Best Choice 연금보험 II_2종(이율확정 5년)_1형(거치형)

무배당 The Best Choice 연금보험 II_2종(이율확정 5년)_2형(쿠폰형)

무배당 The Best Choice 연금보험 II_3종(이율확정 3년)_1형(거치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 개시 후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상속연금형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가입된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 전에 다른 연금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

유형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지급 개시나이
1종(이율확정 기간 10년)	일시납	일시납	0세 ~ 80세	(가입나이+10)세 ~ 90세
2종(이율확정 기간 5년)	일시납	일시납	0세 ~ 80세	(가입나이+5)세 ~ 90세
3종(이율확정 기간 3년)	일시납	일시납	0세 ~ 85세	(가입나이+3)세 ~ 90세

※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45세를 최저한도로 한다.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된다.

가.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이며, 납입 한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기본보험료 납입한도
1종(이율확정기간 10년)	1,000만원 ~ 300억원
2종(이율확정기간 5년)	1,000만원 ~ 300억원
3종(이율확정기간 3년)	2,000만원 ~ 300억원

나. 추가납입보험료

- ① 추가납입보험료는 이율확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 2개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 납입한도는 납입총액(일시납 기본보험료)의 2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추가납입보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 ③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매년 기본보험료의 30%이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요약]

구 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총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200%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 30%

- ④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⑤ ② 및 ③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입 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의 30%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

6.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율확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하며,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2회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의 합계)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한다.

다. ‘가’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기본보험료의 20%이상으로 한다.

라. ‘가’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인출할 때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인출 후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9. 생활자금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생활자금인출서비스는 계약자적립액 인출의 일환으로 다음에 정한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① 이율확정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
- ② 신청시점이 「연금지급 개시일 - 2년」 이전인 경우

나. 계약자가 생활자금인출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다’항에 따라 인출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마다 자동지급 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부가하지 않는다. 계약자는 생활자금인출 주기를 매월, 3개월, 6개월 또는 매

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다. 생활자금인출금액은 생활자금 지급시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지급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지급시점 이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에서 각 지급시점 이전까지의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자금인출서비스는 중지된다.

- ① 계약자가 생활자금인출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 ② 생활자금인출서비스에 의해 생활자금이 자동지급되는 동안 별도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신청한 경우
- ③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한 경우
- ④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
- ⑤ 생활자금인출금액이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 하는 경우
- ⑥ 생활자금인출 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기본보험료의 20% 이하가 되는 경우

마. 생활자금인출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부족한 금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한다.

바. 은행계좌 등 계약자 정보변경으로 생활자금인출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해당일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생활자금인출금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되지 않는다. 이후 지급이 가능하게 된 때, 기존에 지급하기로 한 생활자금인출금액에 그 경과된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10.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연금계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다만, 보험가입시점부터 “보너스 적립이율” (1종의 경우 1년간 1.5%, 2종의 경우 1년간 0.8%, 3종의 경우 3년간 1.5%)을 더하여 적립이율을 적용한다.

나. ‘가’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회사가 1종(이율확정기간 10년), 2종(이율확정기간 5년), 3종(이율확정기간 3년) 별로 각각 정한 이율로 하며, 보험가입시점의 보험종류별 공시이율은 보험가입시점부터 각각 최초 10년, 5년, 3년간은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공시이율 확정기간(이하 이율확정기간이라 한다) 이후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매월 1일 '다' 의 2)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이율확정기간 중 공시이율

1종(이율확정기간 10년): 공시이율(%) = 기준금리 - 0.05%

기준금리 = 국고채권(10년) x 60% + 공사채 및 공단체 AAA (10년) x 40%

- 기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하여 적용한다.
- 국고채권(10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민간채권평가사의 10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평균값(매월 1일과 16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2번째 영업일에서 4번째 영업일까지의 3 영업일 동안 해당 수익률의 산술평균값)
- 공사채 및 공단체 AAA(10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민간채권평가사의 10년 만기 공사채 및 공단체 AAA 수익률의 평균값(매월 1일과 16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2번째 영업일에서 4번째 영업일까지의 3 영업일 동안 해당 수익률의 산술평균값)

2종(이율확정기간 5년): 공시이율(%) = 기준금리 - 0.1%

기준금리 = 국고채권(5년) x 50% + 공사채 및 공단체 AAA (5년) x 50%

- 기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하여 적용한다.
- 국고채권(5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민간채권평가사의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평균값(매월 1일과 16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2번째 영업일에서 4번째 영업일까지의 3 영업일 동안 해당 수익률의 산술평균값)
- 공사채 및 공단체 AAA(5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민간채권평가사의 5년 만기 공사채 및 공단체 AAA 수익률의 평균값(매월 1일과 16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2번째 영업일에서 4번째 영업일까지의 3 영업일 동안 해당 수익률의 산술평균값)

3종(이율확정기간 3년): 공시이율(%) = 기준금리 - 0.1%

기준금리 = 국고채권(3년) x 70% + 공사채 및 공단체 AAA (3년) x 30%

- 기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하여 적용한다.
- 국고채권(3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민간채권평가사의 3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평균값(매월 1일과 16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2번째 영업일에서 4번째 영업일까지의 3 영업일 동안 해당 수익률의 산술평균값)

- 공사채 및 공단체 AAA(3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민간채권평가사의 3년 만기 공사채 및 공단체 AAA 수익률의 평균값(매월 1일과 16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2번째 영업일에서 4번째 영업일까지의 3 영업일 동안 해당 수익률의 산술평균값)

2) 이율확정기간 이후 공시이율

회사는 객관적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단,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헛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①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보험료수입

- ②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③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④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직전년도 보험료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⑥ 「직전년도 보험료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2) 객관적 외부지표금리

① 객관적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 × 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 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②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일을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 ④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3) 운용자산이익률

- ①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 ②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 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수익율}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ext{투자지출율}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③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 라.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 이상으로 적용한다.
-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로 한다.
-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관련 회사내부지침을 따른다.
- 아.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투자리스크 전체를 부담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투자영업수익은 재보험계약을 출재한 보험회사가 아닌 이를 인수한 보험회사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에 포함한다.

11.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에 관한 사항

- 가.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는 계약자적립액에 (1 - 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다만, 2형(쿠폰형)의 경우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쿠폰지급금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시장가격조정률(MVA: 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MVA = 1 - \left[\frac{1 + \text{가입시점의 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 공시이율} + 0.5\%} \right]^{(\text{잔여월수}/12)}$$

다만,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의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한다.

- 다. 시장가격조정률(MVA)의 최고한도는 20%로 한다.
- 라. MVA 계산 시 사용되는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및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은 보너스 적립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한다.

12.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은 이율확정기간동안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설정된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에서 운용한다.

나.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1) 회사는 이월확정기간동안 해당 공시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의 자산을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가) 이 보험의 자산은 국공채, 국내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AA이상의 특수채 및 우량 회사채, MBS, 구조화채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 등을 그 주된 자산 운용으로 한다.

나) 이월확정기간동안 자산(단, 유동성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은 제외)의 평균 잔존만기는 부채 잔존만기의 70% ~ 130% 범위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한다. 다만, 부채의 잔존만기가 2년 이내일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2)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 에서 정한 자산 운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금리 급변, 대량 해지 등의 급격한 시장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나) 운용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 운용자산의 즉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라) 가) 내지 다)에 준하는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3) 1) 및 2) 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설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또는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총 자산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는 1) 및 2) 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및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평가한다.

라.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 등의 납입, 계약 원리금의 상환 등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납입일이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가) 보험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나)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다) 이율확정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
 - 라)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 마)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바) 보장계약의 순보험료 및 유지비의 이체 사유가 있는 경우
- 3) 1) 및 2) 에 있어서 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 경과 이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특별계정관련 자금이체)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 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 나. 계약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며,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 가중평균한 이율을 적용한다.

14. 쿠폰 지급금에 관한 사항

- 가. 지급 주기 및 시기

보험유형	지급 주기	지급 시기
쿠폰형	매년	계약일 이후 만 1년 경과시점부터 쿠폰지급금 지급기간까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매월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쿠폰지급금 지급기간까지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
	매 6개월	계약일 이후 만 6개월 경과시점부터 쿠폰지급금 지급기간까지 매 6개월 보험계약 해당일

단, 쿠폰지급금 지급기간은 1종(이율확정기간 10년)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2종(이율확정기간 5년)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중 년 단위로 한다.

- 나.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미지급 쿠폰지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수익자가 연금지급 개시시점까지 지급받지 않은 쿠폰 지급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5. 기타

가.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한다.
- ②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9%이내에서 지급한다.

나. 회사는 상품명칭 및 보험종목의 명칭 앞뒤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은행 등 보험대리점(금융기관보험대리점 포함)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다.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라. 부가 가능한 특약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적용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을 통하여 전환해준다.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 ①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한 계약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계약 중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큰 계약
--

-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 ②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은 주보험 가입할 때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한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한다.
- ③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달라질 수 있다.
- ④ 연금지급형태 중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은 연금전환일로 한다.
- ⑤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 ⑥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할 때 주계약 전체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부분 연금전환할 수 있다.

2) 「무배당 종신전환특약」 적용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가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종신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무

배당 종신전환특약」을 통하여 전환해준다.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전환 가능한 계약의 조건은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의 기초서류에 따른다. 다만,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는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의 기초서류에 명시된 유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전환이 가능하다.

마. 피보험자 교체에 관한 사항

1) 피보험자 교체 대상 계약

- ① “교체 전 피보험자”와 “교체 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교체일에 모두 생존하는 계약으로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

- (1) 계약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계약
- (2)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
- (3) 교체일 당시 “교체 후 피보험자”의 피보험자 나이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 “2.나.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에서 정한 가입나이 범위 이내 인 경우

2.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법인이 아니며 “교체 후 피보험자”가 “교체 전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

3. 다음 (1) ~ (3)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

- (1)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법인이며 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계약체결시점 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
- (2) “교체 전 피보험자”가 퇴직으로 더 이상 계약자인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아닌 경우
- (3) “교체 후 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 이때, “교체 후 피보험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인 경우는 “교체 후 피보험자”는 “교체 전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이어야 함.

2) 피보험자 교체 신청 및 취소

-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시점 직전 1년 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2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교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의 교체를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승낙 이후에 교체일 이전에 “교체 전 피보험자” 또는 “교체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호 교체대상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신청을 무효로 한다.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교체신청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4) 계약자는 피보험자 교체 신청 시점에 “교체 후 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선택하여야 한다.

5) 4)에 따른 “교체 후 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① “교체 후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지급개시나이는 45세 이상 90세 이내여야 한다.

② 연금지급개시나이는 이율확정기간 이후로 선택 가능하다.

6) 계약자는 교체 승낙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교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일 이후에는 교체 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7) 계약자가 교체 후 피보험자의 보장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로 교체 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체 전 계약으로 환원하여 교체일부터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교체 전 계약내용을 적용한다.

① 회사가 교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② 교체 신청 시 계약자, 교체 전 피보험자, 교체 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교체 신청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

8) 피보험자 교체의 적용

① 2)에 따라 피보험자 교체가 승낙된 경우 교체일은 교체 신청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본다. 교체일부터 “교체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교체 후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된다.

② 교체일 현재 “교체 후 피보험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일로 한다.

③ 피보험자 교체 이후 위험보험료 및 연금액은 피보험자 교체일(교체시점)의 위험률 및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 및 연금액 등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쿠폰형의 쿠폰지급기간 중에 피보험료를 교체한 경우, 피보험자 교체일 이후 쿠폰지급금은 “교체 후 피보험자” 기준으로 변경된다.

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저축성보험 신규가입과 추가납입제도의 비교 설명내용을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에 따라 안내자료에 기재하여 운영한다.

사.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 서비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